

의안 번호	1531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9. 3. 14.(목)
-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3. 14.(목)
- 라.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3. 26.(화)

2. 제안설명 요지(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가. 제안이유

- 노외주차장의 최초 20분 주차요금을 감면하여 공영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불법주정차로 인한 통행불편 완화
- 친환경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해 시행중인 주차장 요금 감면혜택을 “저공해 자동차” 까지 확대하고, 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에는 최초 1시간의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 면제조항을 추가

나. 주요내용

- 주차 일부시간에 대한 무료 규정 단서 삽입
 -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최초 주차시간이 20분 이내 일 때는 무료로 함(별표1)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내용을 추가하여 친환경 자동차 감면 대상 확대(안 제6조제4항제10호)
- 상위 법령에서 기계식주차장 철거에 관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한 내용 반영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기계식주차장의 철거가 가능하도록 조항 신설(안 제11조의2)

다. 근거법규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주차장법」 제19조의1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5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유경달)

-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19조에 근거하여
저공해 자동차 주차 감면 내용을 추가하고,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와 관리를 명확히 하였으며, 노외주차장에 무료 주차시간을
20분 제공 하여 불법주정차를 예방 하고자 함.

-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저공해 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차장법

제19조의13(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④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5(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의1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종류별로 2분의 1의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에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관리감독기관의 장"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 가. 교육장: 어린이놀이시설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에 소재하는 경우
 - 나.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가목 외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